##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전진숙

이수진 • 주철현 • 이훈기

부승찬 • 윤종군 • 정준호

이언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 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 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 법률 제 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배우자는"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및 제5항 중 "배우자가"를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로"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	④ <u>배우자 및 직</u>
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계존비속은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	⑤
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u>배우자 및</u>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	직계존비속에게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및 처리)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공직자등이 자신의 <u>배우자가</u>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한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 는 그 <u>배우자가</u> 수수 금지 금 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2
<u>및 직계존비속이</u>
2
<u>배우자 및 직</u>
<u>계존비속이</u>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③ (현행과 같음)</li> </ol>
4
<u>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u> -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 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 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 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⑤
배우자 및 직계존
<u>비속이</u>
⑥ (현행과 같음)
⑦
<u>н</u> Д
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직자등의 <u>배우자로</u>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자신의 <u>배우자가</u>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u>배우자가</u>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 <u>배우자</u>
및 직계존비속으로	
 ⑧ (현행과 같음)  22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2 <u>배우자 또는</u>	직계존
<u> 비속이</u>	
· 배우자나_	
비속이	
2의2. 제8조제4항을 위팅	반한 공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 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7	직고	·등(	[제1	1조	케	따라	} {	존용	되
<u> </u>	느	공두	<u> </u> 수	행사	인을	<u> </u>	근 함	·한I	<u> </u>
9	의	배스	<u> </u>	또	는	직;	계존	- 비	속 <u>.</u>
Ţ	구민	<u>ŀ,     </u>	공직	자등	<u> </u>	포는	- 出	H우	자
l	+	직기	계존	비속	(0)	제	9조	제2	항
<u>-</u>	케	따근	<b>)</b> 수	-수	금	지	금듣	동등	을
ļ	반혼	<u> </u> 또	는	인도	를하	거ㄴ	<del>】</del> フ	부	의
9	의시	를	丑)	시한	경	우는	ニ ス	레외	<u>한</u>
Ţ	<u> </u>								
3.									
_									
_									
_									
_							<u>н</u>	ㅐ우	자
1	+	직겨	[존년	비속	에 거	<u>]]</u> – –			
-									
_				_					
4.	· 5.	(ক্	현행:	라 같	날음	.)			
2	~	4	(현	행고	斗 不	같음	)		
23	조(	과티	료	부	과)	1	) -	~	4
( ਨੂੰ	현행	과	같음	-)					
5	-								

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 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1. (생략)
- 2. 자신의 <u>배우자가</u>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u>배우자가</u>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u>.</u>
<ol> <li>(현행과 같음)</li> <li></li></ol>
비속이
· 배우자나 직계존
<u>비속이</u>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을 포함한다) 또는 그 <u>배우자</u>
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⑦ (생 략)

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J.	
	<u>배우자</u>
나 직계존비속에게	

⑥·⑦ (현행과 같음)